

 국토교통부		보도자료		국민의 내일을 위한 정부혁신 보다나은 정부
		배포일시	2018. 3. 28(목) 총 5매(본문 5매)	
담당부서	규제개혁 법무담당관	담당자	• 과장 김명준, 사무관 정은선, 주무관 윤성민, 허준 • ☎ (044) 201-3224, 4816, 4818, 4817	
	건축정책과	담당자	• 과장 남영우, 사무관 최중화, 주무관 문언진 • ☎ (044) 201-3755, 3761, 3763	
	택시산업팀	담당자	• 팀장 윤종빈, 사무관 김동규, 주무관 전철주 • ☎ (044) 201-4770, 4757, 4772	
	자동차정책과	담당자	• 사무관 나귀용, 주무관 박성준 • ☎ (044) 201-3836, 3840, 3841	
	물류산업과	담당자	• 과장 김완국, 사무관 최은지, 주무관 조우철 • ☎ (044) 201-3836, 4017, 4022	
	도로운영과	담당자	• 과장 오수영, 사무관 김정환, 주무관 윤경탁 • ☎ (044) 201-3836, 3912, 3841	
보도일시		2018년 3월 29일(금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3.29(금) 06:00 이후 보도 가능		

“규제 입증책임 전환” 을 통한 선제적 규제개선으로 혁신성장을 이끌어하겠습니다.

28일 차관급 격상 첫 규제혁신심의회…주택자동차물류 등 주요 개선방안 확정

□ 국토교통부는 3월 28일(목) 김정렬 제2차관 주재로 제1회 규제혁신 심의회를 개최*하였습니다.

* 참석 : 국토교통부 제2차관(주재), 감사관, 정책기획관, 국토정책관, 종합교통 정책관,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, 대한상공회의소 규제혁신팀장 등

○ 이날 회의에는 대한상공회의소,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를 포함, 법률전문가, 국토교통 분야 민간전문가 등이 참석하였고, ‘규제 정부 입증책임 전환**’을 통해 주택, 자동차, 물류 등의 분야의 주요과제 개선방안을 확정하였습니다.

** 기업이 규제개선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규제존치 필요성을 입증

□ 국토교통부는 기업과 국민들이 현장에서 부딪히고 있는 어려움을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'18년부터 기획조정실장 주재로 '규제혁신 심의회'를 운영해 왔으며,

- 심의회 설치('18.2.21.) 이후 총 4회의 심의를 통해 신산업 활성화,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규제혁신을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.
- 특히, 이번 회의는 규제를 존치할 경우 그 필요성을 정부가 입증하는 '규제 정부 입증책임 전환'을 보다 적극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위원장을 기획조정실장에서 차관급으로 격상하였으며,
 - 경제단체와 협조하여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목소리를 직접 확인하고 개선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.
- 김정렬 제2차관은 모두발언에서 “당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규제혁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”고 언급하면서,
 - “특히 기술과 서비스가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”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.
- 이번 규제혁신심의회를 통해 개선되는 대표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.

【유형 ①】 《 건축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규제개선 》

▶ **기존 어린이집의 4~5층을 보육실로 변경하는 경우 피난계단은 면적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**

[기존]	기존 어린이집 4~5층을 보육실로 변경하는 경우 피난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나 그에 따라 건폐율·용적률 등이 증가하여 건축법령 위반
[개선]	피난계단 설치에 따라 건폐율과 용적률이 증가하는 경우 그 부분은 면적산정 대상에서 제외

- 어린이집의 4~5층을 보육실로 변경하는 경우 건축물 내 양방향 대피가 가능한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도록 의무화 되어있으나,
 - 피난시설 설치시 건축물의 건폐율·용적률 등이 초과되어 건축법령을 위반하게 되므로 기존 어린이집의 운영 활성화에 한계가 있습니다.

- 이에 따라 4~5층을 보육실로 변경하는 경우 피난계단이 피난안전시설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건폐율·용적률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면적산정을 완화하도록 건축법령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.

▶ **특수자동차를 화물자동차로, 화물자동차를 특수자동차로 차종변경하는 튜닝이 허용됩니다.**

기존 특수자동차를 화물자동차로 변경하는 등 차종 변경이 수반되는 튜닝은 제한

개선 특수자동차와 화물자동차 상호간 차종변경 튜닝이 가능하도록 허용

- 특수한 목적을 위해 제작되고 있는 특수자동차(고소작업차 등)는 향후 화물자동차로 사용하고자 하여도 차종변경이 불가능하여,

- 고소작업차의 경우 고소작업 장치를 제거하고 화물차로 충분히 이용이 가능함에도 폐차해야 하는 등의 문제*가 있습니다.

* 특수자동차와 화물자동차는 제작단계에서 적용되는 성능시험 평가기준이 거의 동일

- 이에 따라 특수자동차와 화물자동차 간 튜닝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.

【유형 ②】 《 도로점용 절차 완화 등 불합리한 제도 개선 》

▶ **도로점용의 권리·의무의 승계절차를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.**

기존 도로점용허가에 따른 권리·의무를 승계한 자는 당초 허가자의 서명을 받아 1개월 이내에 도로관리청에 신고해야 함

개선 당초 허가자의 사망 등으로 서명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서명을 생략하도록 제도 개선

- 도로점용허가에 따른 권리·의무를 승계한 자는 당초 허가자의 서명을 받아 1개월 이내에 도로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하나,

- 도로점용 허가자가 사망하거나 법인이 분할·합병하는 등의 사유로 인해 불가피하게 당초 허가자의 서명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.

- 이에 따라, 도로점용의 승계 신고서 서식을 개정하여 도로점용의 권리·의무 승계절차를 완화하겠습니다.

【유형 ③】 《 과도한 행정절차 및 조치 개선 》

▶ 하루만 휴업해도 자동차 번호판을 반납해야 하는 택시운송사업자의 불편함이 해소됩니다.

기존 택시운송사업자는 하루를 휴업하기 위해서도 자동차 등록증 및 번호판을 반납하고, 개시신고 시 번호판을 다시 수령해야 함

개선 일정기간 이상 휴업시에만 등록증 및 번호판을 반납하도록 하는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추진

- 택시운송사업자는 휴업 시 시·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, 자동차 등록증,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반납하도록 되어있으나,

- 단 하루를 휴업하기 위해서도 번호판을 반납하고, 개시신고 시 번호판을 다시 수령해야 하므로 휴업 절차가 번거로운 문제가 있었습니다.

- 이에 따라, 택시운송사업자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일정기간 이상 휴업 시에만 번호판을 반납토록 하는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개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.

▶ 대폐차 기한 내에 대차하지 않을 경우의 행정조치가 완화됩니다.

기존 대폐차 신고 후 기한 내에 대차하지 않을 경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대장에서 말소

개선 기한 내에 대차하지 않았을 경우 별도의 기한을 추가로 지정하고 그 안에 대차하지 않을 경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9조제1항제3호에 의해 처분

- 현재는 대·폐차 신고 후 기한 내에 대차하지 않은 차량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대장 등에서 바로 말소하고 있으나,

- 운송업체 직원의 경미한 실수 또는 차량 매매계약의 차질 등으로 인해 차량을 대차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제도 없이 바로 허가대장에서 말소하는 문제가 있습니다.
- 따라서, 대·폐차 기간 내에 대차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한 경우 별도의 기한을 지정하고 그 기한 안에도 대차하지 않을 경우 허가대장에서 말소하도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.
- 이 자리에서 김정렬 2차관은 “이번 회의가 규제혁신을 위한 그간의 성과를 확인하고, 규제혁신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”고 강조하면서,
- “앞으로도 경제단체, 업종별 협회, 지자체 등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현장의 애로를 적극 발굴·해소하여 기업과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”이라고 밝혔습니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정은선 사무관(☎ 044-201-4816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